

---

#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2019. 4



국토교통부

#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1.1 계획의 목적

- 본 계획은 오산~화성 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 171호선의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국토간선도로망 남북 1축 지선과 남북2축 지선 연결을 통해 광역 남북간선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교통 분산도모 및 다양한 통행경로를 제공하고, 통행여건을 대폭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1.2 계획의 개요

###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지하기 전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 주) 1. 계획노선은 17.3km의 신설도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범위(환경영향평가법) : 도로의 건설사업(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등)

## 1.2.2 계획의 내용

- 계획명 :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서오산TG) ~ 경기도 용인시 성북동(서수지TG)
- 연장 : L=17.3km (B=20m, 왕복 4차로)
- 설계속도 : 100km/h(도시고속도로)
- 사업시행자 : (가칭) 경기중앙고속도로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 공사기간 : 2021년 ~ 2026년
- 운영기간 : 2026년 ~ 2056년(30년)
- 주요 계획내용

구분	주요 사업내용	비고
교량공	15개소 / 1,704m	
구조물공	BOX : 1개소 / 830m, U-type : 1개소 / 300m	서울방향 본선기준
터널공	2개소 / 8,021m (동수원터널 7,737m, 성북2터널 284m)	서울방향 본선기준
출입시설	5개소(안녕, 서동탄, 세류, 팔달, 서수지)	
유지관리사무소	1개소	
영업소	본선 2개소(서동탄, 성북)	스마트 톨링 시스템 적용



(그림 1-1) 위치도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제5조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12인(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관련전문가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19.3.8~2019.4.17(의견제출기간 : 2019.3.14까지)
- 결정사항 : 대상지역의 설정,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2. 토지이용구상안 / 3. 대안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 2.2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 2.2.1 평가대상지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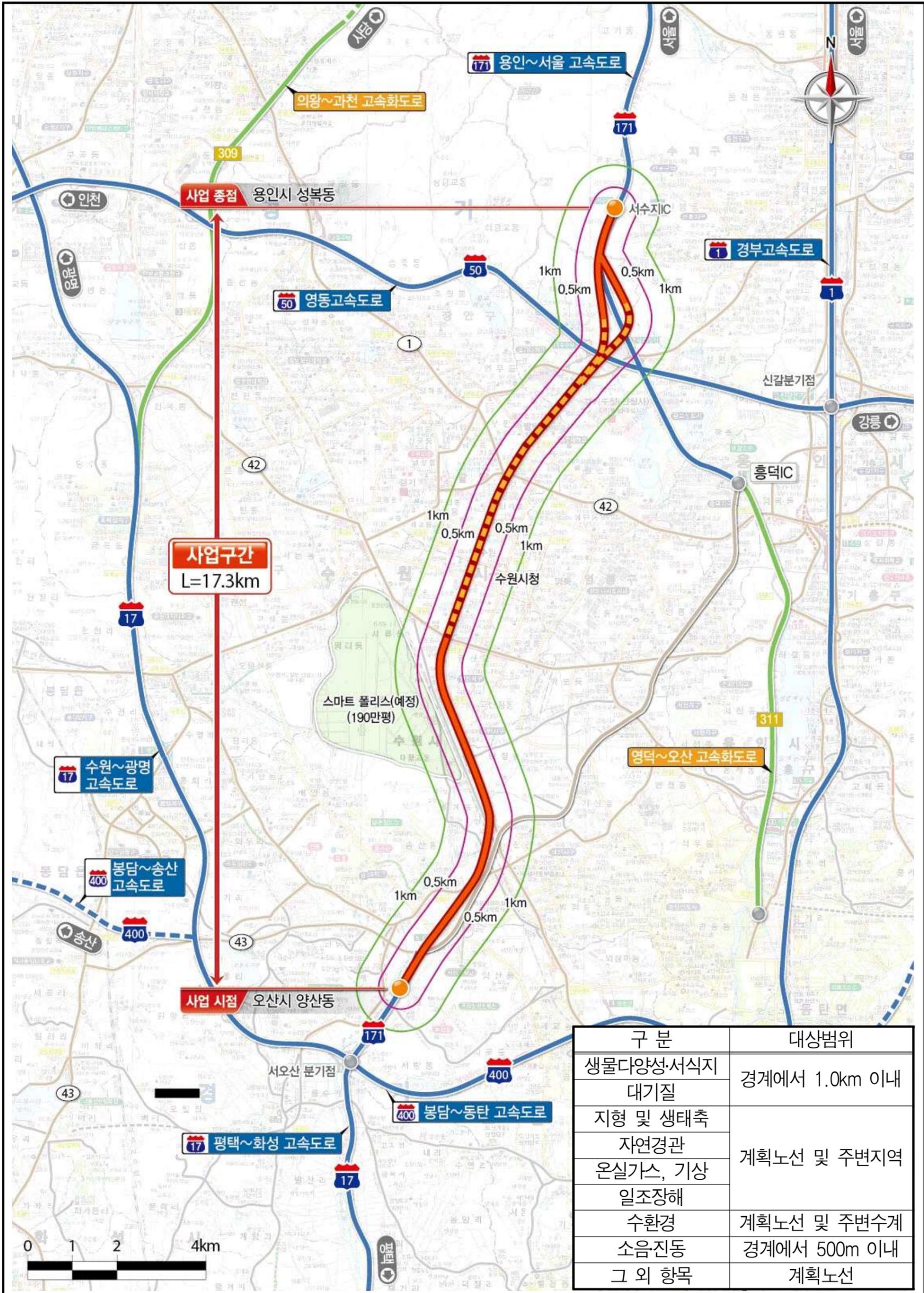
&lt;표 2-1&gt;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지역 설정

구 분		대상지역 설정사유	대상지역의 범위	비 고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동·식 물상에 미치는 서식환경 변화 예측	○계획노선 경계로 부터 1.0km 이내	공사시 운영시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공사중 절·성토 및 구조물 설치에 따른 지형변화	○계획노선 및 주변 지역	공사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절·성토 등 지형변화 및 교량·교차로·방 음벽 등 구조물 신설에 따른 경관변화	○계획노선 내 개착 구간	공사시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수 질 및 수리·수문	○공사중 강우시 토사유입이 예상되는 수계 ○교량 공사시 하천의 수질변화 및 수리·수 문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공사시 투입인원에 의한 오수발생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비점오염물질 발생	○계획노선 및 주변 수계	공사시 운영시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공사시 건설장비 이용 및 공사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운영시 차량운행에 따른 배기가스에 의한 영향	○계획노선 경계로 부터 1.0km 이내	공사시 운영시
		토 양	○공사시 지장물 철거, 폐유발생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	○건설·생활·지정 폐기물 발생지역	공사시
		소음·진동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의 소음·진동 영향 ○차량운행에 따른 도로소음 발생 및 영향예상	○계획노선 경계로 부터 0.5km 이내	공사시 운영시
		일조장해	○계획노선 입지에 의한 일조장해 영향예상	○계획노선 및 주변 지역	운영시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지역 설정

구 분		대상지역 설정사유	대상지역의 범위	비 고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	○ 계획노선 및 주변 지역	공사시 운영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생활폐기물, 분뇨, 건설폐기물 발생 ○ 운영시 도로이용자에 의한 도로변 폐기물 발생	○ 계획노선	공사시 운영시
		온실가스	○ 공사시 건설장비의 가동으로 인한 온실 가스 발생 ○ 운영시 이용차량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 계획노선 및 주변 지역	공사시 운영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토 지 이 용	○ 계획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의 변화	○ 계획노선	공사시 운영시

- 주)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8-205호)에 제시된 영향 범위는 식물상 150m, 동물상 500m를 설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본 계획노선 주변 도로, 기존 시가지, 산림 등 여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고려하여 1.0km로 선정하였음
2. 대기질 조사범위 : 「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부록3. 영향범위(p.421), 2009, 환경부」에 대기질 200m로 제시되어 있으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고려하여 1.0km로 설정하였음
3. 소음·진동 조사범위 : 「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부록3. 영향범위(p.421), 2009, 환경부」에 소음·진동 300m로 제시되어 있으나 계획노선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500m로 설정하였음



(그림 2-1)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도

## 2.2.2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가. 평가항목

&lt;표 2-2&gt; 평가항목의 설정

구 분	평가항목		선정/제외	선정사유	비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선정	○ 상위 행정계획과의 일관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선정	○ 계획 및 입지대안의 적정성 분석과 최종안 도출	
자 연 환경의 보 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선정	○ 동·식물 서식지 훼손 및 동·식물상의 분포변화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선정	○ 공사시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및 비탈면 발생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선정	○ 개착구간 지형 및 구조물 변화에 따른 경관변화	
	수환경의 보전	수질 및 수리·수문	선정	○ 공사시 강우에 따른 토사유출, 터널폐수 발생 ○ 운영시 비점오염 물질 발생	
입지의 타당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선정	○ 공사시 투입장비로 인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발생 ○ 운영시 본선 및 터널환기구에서 대기오염물질 발생	
		토 양	선정	○ 공사시 지장물 철거, 폐유발생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	
		소음·진동	선정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 운영시 차량이동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일조장해	선정	○ 운영시 교량에 따른 일조장해 발생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선정	○ 계획노선 인근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 파악	
	자원·에너지 순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선정	○ 공사시 생활, 건설, 지정폐기물 발생	
		온실가스	선정	○ 공사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친환경적 토지이용)		선정	○ 편입용지의 토지이용 변화 발생		

나. 평가범위 및 방법

<표 2-3> 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현황조사 및 평가범위	평가방법	비 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일관성 및 연계성 검토	계획시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계획수립시 및 미수립시의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설정·제시	계획시	
자 연 환경의 보 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계획노선 반경 1.0km 이내	○현장 및 문헌조사, 생태계 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공사시 운영시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주요 생태축·녹지축 훼손여부, 공사시 및 운영시 지형변화 예측	공사시 운영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계획노선 내 개착구간	○절·성토 등 지형변화 및 구조물 신설에 따른 경관자원 변화 예측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수질 및 수리·수문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지표수질 조사지점 : 3개 지점 ○지하수질 조사지점 : 2개 지점	○공사시 토사유출, 오수 및 터널폐수 발생 및 영향 예측	공사시 운영시
생 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계획노선 반경 1.0km 이내 ○조사지점 : 3개 지점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 현황 및 대기, 토양, 소음·진동의 환경기준 부합·유지 여부, 적정 저감방안 제시	공사시 운영시
		토 양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조사지점 : 2개 지점		공사시
		소음·진동	○계획노선 반경 0.5km 이내 ○조사지점 : 7개 지점		공사시 운영시
		일조장해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계획노선 교량으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 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문헌자료 조사를 통한 환경기초시설 현황 조사 및 오염물질 연계가능성 검토	공사시 운영시
	자원·에너지 순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노선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여부 및 자원순환 처리계획 검토	공사시 운영시
		온실가스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원단위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 및 저감방안 수립	공사시 운영시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친환경적 토지이용)		○계획노선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 변화 제시	공사시 운영시	

2.2.3 대안의 설정 및 검토

가. 대안의 설정

<표 2-4> 대안의 선정

구 분	선정기준	내 용									
계 획 비 교	계획수립 여부	1안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Action)								
		2안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								
수 단 · 방 법	계획노선 전체 비교	비교1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선형측면 다소 불리</li> <li>○서동탄C 설치</li> <li>○안녕2지구 우회 노선계획</li> <li>○화산동 집단주거지역 우회 노선계획</li> <li>○국도1호선 내 본선 계획</li> <li>○지하차도 구간 내 세류IC 접속하는 종단계획</li> </ul> <table border="1"> <tr> <td>연 장</td> <td>L=17.3km</td> </tr> <tr> <td>터 널</td> <td>2개소 / 8,021m</td> </tr> <tr> <td>교 량</td> <td>15개소 / 1,704m</td> </tr> <tr> <td>BOX</td> <td>1개소 / 830m</td> </tr> </table>	연 장	L=17.3km	터 널	2개소 / 8,021m	교 량	15개소 / 1,704m	BOX	1개소 / 830m
		연 장	L=17.3km								
		터 널	2개소 / 8,021m								
교 량	15개소 / 1,704m										
BOX	1개소 / 830m										
비교2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선형측면 우수</li> <li>○서동탄C 설치 불가</li> <li>○안녕2지구 통과 노선계획</li> <li>○화산동 집단주거지역 통과 노선계획</li> <li>○국도1호선과 별도 노선계획(사업노선 신설)</li> <li>○지하차도 구간 내 세류IC 접속하는 종단계획</li> </ul> <table border="1"> <tr> <td>연 장</td> <td>L=16.6km</td> </tr> <tr> <td>터 널</td> <td>2개소 / 7,976m</td> </tr> <tr> <td>교 량</td> <td>13개소 / 1,720m</td> </tr> <tr> <td>BOX</td> <td>1개소 / 830m</td> </tr> </table>	연 장	L=16.6km	터 널	2개소 / 7,976m	교 량	13개소 / 1,720m	BOX	1개소 / 830m		
연 장	L=16.6km										
터 널	2개소 / 7,976m										
교 량	13개소 / 1,720m										
BOX	1개소 / 830m										
비교3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선형측면 보통</li> <li>○서동탄C 설치 불가</li> <li>○안녕2지구 통과 노선계획</li> <li>○화산동 집단주거지역 근접 노선계획</li> <li>○국도1호선과 별도 노선계획(사업노선 신설)</li> <li>○터널 구간 내 세류IC 접속하는 종단계획</li> </ul> <table border="1"> <tr> <td>연 장</td> <td>L=17.2km</td> </tr> <tr> <td>터 널</td> <td>2개소 / 8,814m</td> </tr> <tr> <td>교 량</td> <td>11개소 / 2,340m</td> </tr> <tr> <td>BOX</td> <td>1개소 / 220m</td> </tr> </table>	연 장	L=17.2km	터 널	2개소 / 8,814m	교 량	11개소 / 2,340m	BOX	1개소 / 220m		
연 장	L=17.2km										
터 널	2개소 / 8,814m										
교 량	11개소 / 2,340m										
BOX	1개소 / 220m										

## 나. 대안의 비교·검토

&lt;표 2-5&gt; 계획비교 대안에 대한 비교·검토

구 분	1안(Action)	2안(No Action)
대 안	○개발계획 수립	○개발계획의 미수립
선정된 대안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왕복 4차로 신설</li> <li>○도로 신설로 인한 단절구간 발생 및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도심부통과구간을 지하차도로 계획</li> <li>○경제성을 고려하여 국도1호선 부지 활용</li> <li>○우량농지 및 집단주거지를 우회하는 선형계획을 수립하여 소음 및 시각적 공해 최소화 고려</li> <li>○교통용량 확보 및 장래 확장을 고려한 종점부 접속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안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임</li> <li>○본 개발계획을 미수립 할 경우 극심한 지·정체 문제, 교통사고 등의 교통문제 해소에 어려움</li> </ul>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소통 원활</li> <li>○교통사고 예방</li> </ul>	○개발계획 미수립 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없음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 수질 및 대기질 오염 등 예상</li> <li>○지형변화, 자연환경변화 예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산~화성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의 단절로 우회거리 과다</li> <li>○도로용량 부족으로 상습 지·정체 발생</li> </ul>
선정안	◎	

&lt;표 2-6&gt; 수단·방법 대안에 대한 비교·검토

구 분	비교 1안	비교 2안	비교 3안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선형측면 다소 불리</li> <li>○서동탄C 설치</li> <li>○안녕2지구 우회 노선계획</li> <li>○화산동 집단주거지역 우회 노선계획</li> <li>○국도1호선 내 본선 계획</li> <li>○지하차도 구간 내 세류C 접속하는 종단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선형측면 우수</li> <li>○서동탄C 설치 불가</li> <li>○안녕2지구 통과 노선계획</li> <li>○화산동 집단주거지역 통과 노선계획 (사업노선 신설)</li> <li>○지하차도 구간 내 세류C 접속하는 종단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선형측면 보통</li> <li>○서동탄C 설치 불가</li> <li>○안녕2지구 통과 노선계획</li> <li>○화산동 집단주거지역 근접 노선계획</li> <li>○국도1호선과 별도 노선계획 (사업노선 신설)</li> <li>○터널 구간 내 세류C 접속하는 종단계획</li> </ul>	
연 장	L=17.3km	L=16.6km	L=17.2km	
주요 구조물	터널	2개소 / 8,021m	2개소 / 7,976m	2개소 / 8,814m
	교량	15개소 / 1,704m	13개소 / 1,720m	11개소 / 2,340m
	BOX	1개소 / 830m	1개소 / 830m	1개소 / 220m
특 징	기술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선형측면 다소 불리</li> <li>○서동탄C 설치로 사업노선 이용 유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선형측면 우수</li> <li>○서동탄C 설치불가로 사업노선 이용 불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선형측면 보통</li> <li>○서동탄C 설치불가로 사업노선 이용 불리</li> </ul>
	환경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녕2지구 우회노선으로 민원 사전예방</li> <li>○화산동 우회노선으로 생활환경 보전 및 민원 예방</li> <li>○국도1호선 내 사업노선 계획으로 자연환경측면 유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녕2지구 통과노선으로 민원측면 불리</li> <li>○화산동 통과노선으로 생활환경 및 민원측면 불리</li> <li>○국도1호선과 별도 사업노선 신설 계획으로 자연환경측면 불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녕2지구 통과노선으로 민원측면 불리</li> <li>○화산동 근접노선으로 생활환경 및 민원측면 불리</li> <li>○국도1호선과 별도 사업노선 신설 계획으로 자연환경측면 불리</li> </ul>
	경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도1호선 폭 최대 활용으로 공사비 저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도1호선구간 신설노선으로 공사비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도1호선구간 신설노선으로 공사비 증가</li> </ul>
검토의견	○도로선형 측면에서 다소 불리하나 서동탄C 설치로 사업노선 이용이 유리하고, 안녕2지구 및 화산동 우회 노선으로 민원 최소화 및 국도1호선 활용으로 환경적측면과 경제적측면을 고려한 비교1안을 최적노선으로 선정			
선정안	◎			

### 2.2.4 주민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표 2-7> 주민의견수렴 법적 실시근거

구분	관련법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본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은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일간신문)과 계획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아래사항을 수록할 계획임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 포함)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공고, 공람의 내용, 초안 요약문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은 본 개발기본계획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 지자체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국토교통부 정보통신망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고, 공람장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준수)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함께 소정양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비치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할 계획임
- 공람기간은 법적 준수기간인 20일 이상 4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로 할 것임

<표 2-8> 공고 장소 및 내용

구분	게시 내용
관할 지자체 정보통신망 또는 국토교통부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 - 개발기본계획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상동)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나.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초안에 대한 설명회는 공람기간 중 실시할 계획이며,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주무관청 및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임
- 설명회 개최 공고는 초안 공람·공고시 포함하여 공고하고, 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적법하게 개최할 것임

&lt;표 2-9&gt; 공청회 개최 조건

구 분	공청회 개최 조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li> <li>○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li> </ul>

## 2.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결과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b></p> <p><b>□ 총괄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지자체 및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li> </ul> <p><b>□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지역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li> </ul> </li> <li>2.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계획의 수립이 요구됨</li> </ul> </li> <li>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li> <li>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에 대하여 사업(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선정 요망</li> </ul> </li> <li>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자체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li> </ul> </li> <li>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li> </ol> <p style="text-align: right;">2019. 3. 14.</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b></p> <p><b>□ 총괄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에 따른 영향을 대안별로 면밀하게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함</li> </ul> <p><b>□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없음</li> </ul> </li> <li>2.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ul> </li> <li>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예정노선에 대한 대안별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함</li> </ul> </li> <li>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없음</li> </ul> </li> <li>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시행하고 사업 시행 시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함</li> </ul> </li> <li>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없음</li> </ul> </li> </ol> <p style="text-align: right;">2019. 3. 19.</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b> <b>[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p> <p><b>□ 총괄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종합개발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본 계획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제시하고 본 계획과의 연계성·부합성을 중점 검토하여야 함</li> <li>○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18.12.1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li> </ul> <p><b>□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상위 도로망계획상 우선 순위 등 상위계획의 부합성, 주변 도로 현황 및 도로계획, 장래 교통량 추정,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 및 목적을 명확히 제시</li> <li>○ 대안의 비교·분석은 환경적 측면의 평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을 대표하는 지표로 선정하여 실시하고, 평가지표는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환경(산림식생 파괴화 지수, 양호식생 훼손면적, 하천평단구간 수 등, 지형변화지수, 지형 단절지점지수, 사면발생지수 등), 생활환경(영향권내 정온시설의 수와 이격거리), 경제성(환경비용(방음터널,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 등 설치비), 사회성(농경지 파괴화지수, 마을 단절성, 주민의견 등)</li> </ul> </li> <li>○ 전체 노선 대안은 도로의 기능성, 환경성, 주민민원 등을 고려하고 현지역건과 노선이 통과하게 될 지역의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개 이상 설정하여 제시(불가피하게 3개가 안될 경우는 그 사유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정 대안별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 노선 선정</li> </ul> </li> <li>○ 한남정맥 등 회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이나 장대터널로 인한 환기구로 인한 대기질 영향 구간 등 환경적 배려가 필요한 구간은 구간별로 환경적인 고려를 하여 2개 이상의 대안을 설정·평가하여 최적 노선 선정</li> </u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노선 인근 개발계획 등을 파악하여 대기질, 소음·진동 등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계획노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시기, 조사지점, 조사주기 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폴리스조성계획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저감방안 강구</li> </ul> </li> <li>○ 계획노선이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계획으로 공사시 및 운영시 주변 정온 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및 대기질·소음진동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강구</li> <li>○ 일조장해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으나, 농경지를 통과하는 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농작물에 대한 영향 검토를 위해 일조장해 평가항목 설정</li> <li>○ 장대터널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공사(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문제, 환기탑(수직갱) 설치에 따른 대기오염 심화 우려, 지하수 과다 유출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터널 진·출입부 및 환기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해 정도(공명소음 고려)를 반영한 위치 및 형식 등 검토</li> </ul> </li> </ul> </li> <li>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지역* 주민들이 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진동, 대기질 등으로 민원이 우려되는 구간은 충분한 설명 및 사전협의를 거쳐 노선 선정 필요</li> <li>* 대상지역 : 계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li> </ul> </li> </ul> </li> <li>6.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적정성 평가서 상·하위 및 관련계획(환경보전계획 포함)과의 연계성·부합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계획을 상세하게 비교·분석하여 제시하고, 관련 근거자료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종합개발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등에서 제시된 고속도로분야 개발방향 등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 검토결과 제시</li> <li>※ 인근 개발중이거나 개발계획인 도로계획과 연계하여 본 고속도로의 필요성 검토 포함</li> </ul> </li> </ul> <p style="text-align: right;">2019. 3. .</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p> </li></ol>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 **총괄 의견**
-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4개시(용인, 수원, 화성, 오산)의 시가지 구간을 통과하고 있어 대기질 및 소음·진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개발계획에 의하여 선정노선이 통과하는 주변지역에 대기질, 소음·진동 등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충분히 포함하여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 토지이용 구상안**
    - 환경친화적인 도로계획, 기존 노선의 활용 및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대안**
    - 수단·방법에 따른 대안 : 도로선형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하나, 안녕 2지구 및 화산동 등의 주거밀집지역을 우회하므로 민원발생소지가 적고, 경기·경수대로 내 사업노선 계획으로 배치하여 국도1호선을 활용할 수 있는 비교1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 현황(이격거리 등)을 파악하고, 소음진동의 영향여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추후 평가서 작성시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질, 소음, 동·식물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저감대책을 충실히 수립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가 요약서를 작성·제공하고, 계획추진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사전조사를 통한 입지의 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환경영향평가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음. 향후, 계획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 규정·지침 등을 준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2019. 3. 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 **총괄 의견**
- 대안별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제시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특히, 동수원터널 및 성북2터널의 경우 주요 도심지 및 보전가치가 높은 산지를 통과하는 계획이므로, 터널구간 주변 지장물, 수리지질 및 지하수 현황조사를 통해 안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아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 3. 대안**
    - 해당 계획의 성격, 계획노선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사업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대안별 면밀한 검토·제시·비교를 통해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각 대안은 비교·검토가 가능한 자료(대안별 도면 및 사업내역 비교표 등)와 대안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업내용 및 주요 대안별 환경적 특징 등)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노선 인근 정온 시설 관련 생활환경 영향 등)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사업의 필요성이나 입지타당성을 면밀히 검토·제시(교통량 분석 등)하여야 함(정량적 근거 제시 포함)
  - 대안별 중평면도를 작성하여 노선에 따른 절·성토량, 절·성토비탈면 발생 정도 등의 지형변화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특히, 터널 입출구 구간 등 주요 토공구간)
  - 하천 통과구간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및 계획노선과 인접한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관리 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함
  - 터널구간의 수리지질 및 지하수, 지장물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면밀히 수행하여 터널 및 상부시설물의 안정성,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의견없음
-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19. 3. 12.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 **총괄 의견**
- 계획노선은 수원시 중심부를 관통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기존 시가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 특히, 도심지역은 기 개발된 시설물,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인하여 환경질(대기, 소음 등)이 저하된 상태로,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을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도심지내 IC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소음** : 소음의 대상지역은 500m로 설정하였으나, 대상지역은 도심지역으로 현재도 소음도가 높은 지역으로 적은 영향으로도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권선도시개발 구역은 현재 비행장소음, 도로소음 등으로 인하여 소음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STA 5+000 지점부터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방안 필요)
    - **동식물상** : 일부지역(황구지천)에 법정보호종(수달)의 분변이 조사된 바, 영향이 예상되는 하천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통해 서식여부 확인.
  - 2. 대안**
    - 노선 대안은 비교1안, 비교2안을 제시하였으나, 터널의 입·출구 위치 변경에 대한 대안은 없으므로 **터널 입·출구 위치 변경 IC 변경에 대한 대안 검토가 필요함.**
    - **“도심지내 IC 제외”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IC설치 예정지는 시가지로서 대기질 및 소음이 수인한도에 근접하여 있으며, IC설치로 인하여 대기질 및 소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류IC, 팔달IC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거나, 위치 등을 재검토하여야 함.**

세류IC 및 팔달IC는 도심지에 계획되어 있으며, IC 설치 시 주변지역에 교통정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대기오염 및 소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류IC(동수원터널 입구부)에는 군공항, 철도, 경수대로, 권선도시개발구역(정온시설) 등이 입지해 있으며, 팔달IC 주변은 수원시의 최대 변화가 및 정온시설(아파트, 오피스텔)이 입지해 있으므로 **도심지내 세류IC, 팔달IC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거나, 위치 등을 재검토하여야 함.**

○ **“권선도시개발구역 인근 지하화”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권선도시개발 구역 및 안릉초등학교 인근지역은 현재 비행장소음, 도로소음 등으로 인하여 소음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STA 5+000 지점부터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방안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 **“환기구 위치·형태 변경”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노선 대안은 비교1안, 비교2안을 제시하였으나, 환기구의 위치는 모두 동일하며, 수원시민이 많이 찾는 **녹지공간이므로 다른 대안검토가 필요함.**

현재 계획된 환기구 주변에는 오피스텔 등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있고, 터널의 입·출구 및 환기구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소음·대기·경관에 대한 저감대책, 터널의 연장변경, 입·출구 및 환기구의 위치·형태 변경 등 다양한 비교안을 검토하여야 함.

한편, 계획도로 주변 새로운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환기구를 설치하는 대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새로운 환기구 설치지역은 대기 영향권역을 고려하여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함.

○ **“광교로 ~ 동수원IC 인근에 추가 진출입 IC 설치”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수원월드컵 경기장 ~ 광고사거리 구간 도로(광교로)와 중첩되는 구간은 동수원IC를 이용하는 통과교통량으로 인해 상습정체가 발생됨.  
 향후, 경기도청 등 주요 시설 이용자로 인해 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광교로~동수원IC 인근에 추가 진출입 IC설치 대안 검토가 필요함.

○ **“안녕IC ~ 흥덕IC” 연결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안녕IC~흥덕IC를 연결하여 도심지를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소음 예측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① 소음의 측정 : 권선도시개발구역 및 안릉초등학교 인근에서 항공기 운행시, 철도 운행시 소음 측정하여 제시하고, 교통량 최대시(첨두시) 도로소음, 배경소음 등을 측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누적평가 시 활용하여야 함.

○ **대기질 예측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① 환기소 / 터널 입·출구 설치 지역은 도심지내에 위치하여 계획되어 있으며, 도심지역은 현재 대기질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로 고속도로 건설공사 시행 후 추가적인 대기질 악화 시 수인한도를 넘을 수 있으므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② IC 설치 시 주변지역의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교통혼잡으로 인한 대기질 가중여부를 명시하고, 이를 누적평가시 반영하여야 함.**

○ **지하수위 검토 및 모니터링 방안 수립**  
 ① 대심도 터널굴착 시 지하수위 저하 및 싱크홀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수위 변화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한편, 공사 전, 중, 후 지하수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고속도로 건설시 광역교통망의 확보를 통하여 광역통행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불가피하게 도로주변 환경여건은 악화되며, 진출입로 주변의 교통혼잡도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 다양한 대안 검토를 통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2019. 4. 12.

심의위원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총괄의견**

○ 해당사업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으로 오염총량 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으로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및 인근지역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해당 사업개발에 의하여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충분히 포함하여 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는 노선계획 수립 및 오염배출부하가 최소가 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소음·진동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지점은 해당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대표성을 가진 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함  
 ○ 설정된 대상지역의 범위를 성북2교 인근의 아파트단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확대할 것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을 다양화 할 것.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강우시 도로에서 유출된 우수 등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등 수질개선대책 수립하여야 함  
 ○ 성북2터널 유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대책 수립 필요  
 ○ 성북2교 인근 대단지 아파트 소음진동 대책 마련필요

2019. 3. 13 .

심의위원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총괄의견**

○ 사업시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 대책(민원 방지 및 민원 해소방안 포함)을 강구·시행하시기 바람  
 ○ 특히, 소음·진동·비산먼지 등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2.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지구 주변 및 사업지구내의 공동주택 등에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와 주거시설 및 학교 등의 건물과의 이격 거리를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함

3. 대안  
 ○ 도로 공사 및 운영시 교통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주변 및 공동주택 등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정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공사 및 운영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학교 등의 인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야하며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운영시 비점오염원에 의한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관련법 규정에 따라 주민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 및 홍보하여야 함

6. 기타  
 ○ 도로 운영 시 교통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증가되는 교통량을 예측하여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2019. 3. .

심의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통보서**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총괄 의견**
- 본 심의는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시 반영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의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환경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공사시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민원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온시설 현황, 영향여부 및 대책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최대한 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19. 3. 18.

심의위원 (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통보서**  
[용인~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총괄 의견**
- 본 계획노선은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을 건설하는 개발기본 계획으로,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대안마련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환경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평가항목별 영향권 범위설정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 주변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누적 영향평가 실시
  2. 토지이용 구상안
    - 향후 주변 개발 여건, 기존 도로 및 철도와의 연계축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검토하고 환경적 악영향이 우려되는 구간은 위치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3. 대안
    - 계획의 목적, 주변 토지이용상황, 입지여건 및 환경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 선정사유와 최종안을 제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사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및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제시

- (동식물상) 법정보호종 등 동식물 조사는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생물의 서식 및 이동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기질, 온실가스) 사업노선 중 도심지에 지하터널이 계획되므로 공사 및 운영 시 대기질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강구,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등을 산정하고 다양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수질·지하수) 터널 굴착 등에 따른 지하수 영향, 터널폐수로 인하여 주변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토사유출, 오수,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소음·진동) 공사 및 운영 시 주변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터널 공사 시 발파로 인하여 주변 정온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경관) 사업시행으로 인한 심각한 경관 훼손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지역 등을 조망점으로 선정하여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라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 여부 검토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함
- 6. 기 타**
- 문헌자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공공기관자료 10년 이내)를 활용하고, 문헌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상기 제시된 심의의견의 반영여부를 제시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019. 3. 19.

심의위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 총괄 의견**
- 환경영향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 평가의 주된 목적이 환경영향과 저감에 있어 공사시와 운영시에 CDM(청정개발체계)처럼 다른 곳에 저감대책을 수립방안 강구.
  - 짧은 구간에 여러 MODEL 사용하여 평가해 졌으면 합니다.
  - 자료를 최근(2018년) 것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영향은 대기질은 1000M정도 넓게
  2. 토지이용 구상안
  3. 대안
    - 터널구간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거친후 배출.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도시를 관통하는 만큼 최적제어기술로 제어하고 미세먼지등 2차오염으로 비표면적이큰 먼지제거에 주력해 주세요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3개시를 거치는 도로이므로 각시에 공청회를 개최해 주세요.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2019. 3. 14 .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 총괄의견

- 본 심의결과 통보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정보 및 설계내용,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초조사의 제공이 부족하여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문제점을 정확 하게 작성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함.
- 사업기간에 비하면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이 짧다고 판단됨.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중 생물다양성서식지보존/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한다하는데 1년도 남지 않은 기간에 이를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부지 팔달IC 부근은 동수원사거리 인근 대형병원과 가까우며 출.퇴근시 혼잡발생이 우려됨. 이에 대한 교통량 측정검토 해야 함.
- 당해연도 수원시에서 수립되는 도시생태자연도 현황 및 2018년 국립생태원에서 발간한 지역의 생태가치 평가 및 인식증진방안 연구 자료를 포함하여 기초조사를 다시 해줄 것을 요망함. 이를 기초로 동·식물상은 상기 '수질' 분야의 영향범위 내 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의 서식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사업부지 수원구간내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의 이동구간이 있을것으로 판단됨.
- 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안성시 경기 남부 5개 기초지자체는 수달복원연구사업을 황구지천·오산천·진위천 등에서 진행중이므로 이 부근에 대해서는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현재보다 확장함을 제시함.
- 수원시 도심지를 관통하므로 공사 및 운영시 소음과 진동, 대기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2.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부지내 토지이용현황중 자연녹지부분이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는바 생태계특성을 파악하고 생물다양성방안 제시

3. 대안

※ 입지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저감방안과 최적 대안에 대한 의견 기술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분당선 및 신분당선, 주변아파트의 지하주차장부근에 대한 지질평가 강화
- 사업기간내 경기도 및 수원시 사업과의 연관성 검토
- 동물의 경우 이동반경이 개체에 따라 다르므로 대상지역범위를 2 Km해야 하며 분류군별 조사시기를 다르게 해야함.
- 소음·진동 영향은 지형적요소를 감안하여 예측하고 정온시설에서의 소음·진동과 발파시 소음·진동의 양을 예측하고 적절한 저감대책을 제시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임.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인접지역의 주민들과 법적인 설명회나 공청회외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함.
- 주민설명회는 관련 이해당사자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공고 외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구체적인 의견수렴 계획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에 의한 환경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영향권 내 주민들이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기사업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에 대한 기본 설명이나, 향후 사업 확장시 주민 반응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어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의견 수렴 시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참여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 사업추진 시 주민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저감방안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여야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은 없어야 할 것임
- 비산 가능성이 있는 지역 범위(대략 2km) 거주 주민의견 등의 필히 요구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 기술

2019. 3. 14.

심의위원